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판매회사,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 08. 18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9 조 (보수)	제3항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제3항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37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판매 1.0000% 신탁 0.0500% 총보수비용 1.5153%	**<보수>** 판매 0.5374% 신탁 0.0400% 총보수비용 1.0427%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8월 18일
- 판매회사,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td><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500%
보수합계 1.5126%
총보수 및 비용 1.5153%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152</td><td>478</td><td>837</td><td>1,906</td></tr></table></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판매회사보수 0.5374%
신탁업자보수 0.0400%
보수합계 1.0400%
총보수 및 비용 1.0427%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table><tr><th>1년후</th><th>3년후</th><th>5년후</th><th>10년후</th></tr><tr><td>107</td><td>337</td><td>590</td><td>1,344</td></tr></table></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r><td>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td><td>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td></tr>
</table>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하나UBS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

변경후) 하나UBS 파워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2)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3) 주식파생형 → 주식형으로 변경
4) 펀드명 변경
5)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
6) 매매, 평가이익 유보반영
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신설>	7.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파생형) 3. 개방형 4. 추가형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모자형(자투자신탁)

	<신설> <신설>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 이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7.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삭제>

	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	

	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제>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 25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 (생략,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08월 1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신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 중 50%(연 1000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

	<신설>	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td><td>하나UBS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d>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분류
증권(주식파생형), <추가></td><td>분류
증권(주식형), 모자형</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td><td>100%이하</td></tr><tr><td>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td><td>40%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이하</td></tr><tr><td>어음</td><td>40%이하</td></tr></table>
<신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able></td></tr>
</table>

		<table><tr><td>주식</td><td>60% 이상</td></tr><tr><td>채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able>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투자전략** •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정보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3. 위험관리** ■ KOSPI200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 KOSPI200지수 추적을 위한 현물(주식) 바스켓은 구성종목의 시가비중, 유동성,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주가지수와의 운용성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비중이 KOSPI200지수의 업종별 투자비중과 유사하게 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2.위험등급**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KOSPI200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추적오차 및 시장대비 변동성을 일간 단위로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축소하도록 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중 법 제 93 조에 따른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삭제>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 1 호)[주식-파생형]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 년 08 월 18 일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2)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3) 주식파생형 → 주식형으로 변경 4) 펀드명 변경 5)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 6) 매매, 평가이익 유보반영

<table>
<tr><td></td><td></td><td>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나.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
</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대상 : 국내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td></tr>
</table>

<table>
<tr><td></td><td></td><td>로 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1.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td><td>100% 이하</td><td>-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함.</td></tr>
<tr><td>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td><td>40% 이하</td><td>-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td></tr>
</table>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d>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td><td>-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td></tr>
<tr><td>기타</td><td colspan="2">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td></tr>
</table>
</td></tr>
</table>

			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함)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5.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 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6.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0%이하로함	
	7.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10.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	

	자산	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의 취득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환매조건부매수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매수** 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		

			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법인발행지분증권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발행주식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1월 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한도 초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	

	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이하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인덱스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 주식 현물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복제대상 주가지수의 투자성과를 추적하기 위하여 주식 등 편입비중 최대한 유지 ■ 주가지수선물 등이 저평가될 경우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정분을 주가지수선물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초과수익 획득추구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복제대상 주가지수와 운용성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복제법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 KOSPI200 구성종목을 구성비에 따라 편입하여 지수와 동일한 가치변동성을 갖도록 하되, 신용위험이 높거나 지수영향력이 미미한 종목은 편입대상에서 배제 또는 유사종목으로 대체 나.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 KOSPI200 지수 추적을 위한 현물(주식) 바스켓은 구성종목의 시가비중, 유동성,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주가지수와의 운용성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비중이 KOSPI200 지수의 업종별 투자비중과 유사하게 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0% 이상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 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본운용방침 ■ 주로 주식 현물 투자를 통하여 KOSPI200 지수의 가치변동과 유사한 성과를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을 시장비중과 일치시키는 업종 중립전략으로 추적오차(Tracking Error)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종목 위주의 대형주 중심 투자로 인덱스를 추적하도록 합니다. ■ 유동성, 재무건전성, 부도위험이 있는 부적합종목 등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외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 비교지수인 KOSPI 200 종목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을 후보 종목으로 선정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여개 종목으로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시 KOSPI 200 을 95% 이상 추적 가능 ■ 종목별 재무위험 및 시장유동성을 고려하여 100 ~ 120 여개 종목으로 최종포트폴리오를 구성 - 규모 :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총계 - 시장유동성 : 거래대금 - 재무위험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 증자 및 감자, 액면분할, 주식배당 등으로 상장주식수 변동 시 * 펀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 100~120 여개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KOSPI 200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므로 성과비교 를 위하여(KOSPI 200 지수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 KOSPI200 지수의 복제를 목표로 KOSPI200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 또는 추적오차(Tracking Error)발생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추적오차(Tracking Error)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추적오차 및 시장대

		비 변동성을 일간 단위로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축소하도록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KOSPI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 81 조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bs-hana.com)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말합니다. - 계약금액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신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삭제>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

		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 년이상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신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7년 08월 18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

		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신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별첨 1 >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이하 "주식"이라 함)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이하 "채권"이라 함)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5.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10%이하	
6.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9.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0.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	

	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때,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법 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동일종목의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각 목의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바.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가목 및 나목만 해당)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
계열회사 발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	

행 주식 투자	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파워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제1호) [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4. 운용전문인력** (생략)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98%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8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6.06%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98%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6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8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90%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6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감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6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4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8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6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4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곤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8월 18일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

		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2017년 08월 18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5.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4.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5.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6. 하나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제1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나목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하나UBS 인덱스플러스액티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1689) -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P772)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62733)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61315)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31815)	- 하나UBS 인덱스플러스액티브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1689) -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AP772)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62733) - 하나UBS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61315) - 하나UBS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31815) - 하나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5143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자투자신탁 추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자투자신탁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펀드코드 : 5143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가>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